

# IMO RO CODE와 대행기관의 지위

유진호\* · 이상일\*\*

\* 한국선급, \*\* 한국해양대학교

## Recognized Organization's Legal Position under IMO RO Code

Jin-ho Yoo\* · Sang-il Lee\*\*†

\* Korean Register of Shipping

\*\*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

핵심용어 : 위탁, 공인선박검사기관, 자격요건, 감독

Key Words : Delegation, Recognized Organization, Requirement of RO, Oversight

2017년도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

### IMO RO CODE와 대행기관의 지위

유진호 · 이상일

2017. 04. 27.  
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

### RO Code 배경과 개요

- 제 2장 / 4.2항  
- 기국은 RO Code 부록 2에서 규정하는 인정기관의 역량을 고려하여 위임 범위를 결정해야 함.  
⇒ 한국정부대행협정문 갱신(15.11.9) 또는 감사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임.
- 제 2장 / 5.1항  
- 기국은 업무를 위임한 인정기관 목록, 위임범위 등을 IMO에 통보해야 함.  
⇒ IMO GISIS상에 우리 정부의 인정기관으로 KR 및 KST가 등재되어 있음. 최신화된 정보로 업데이트가 필요함.
- 제 2장 / 8.2 및 8.3항  
- 기국 법령 또는 관련 법규 등에 기국 업무를 인정기관에 대행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. 또한, 8.3항에 따라 위임한 업무 범위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.

### RO Code 시행에 따라 기국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

- 제 1장 / 2.5항  
- 기국이 인정기관에게 제한된 검사권(Limited Authorization)을 위임함으로써 인정기관이 RO Code 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, 기국은 이를 식별 관리해야 하며 인정기관은 품질경영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.
- 제 2장 / 3.9.2.3 및 3.9.3.1항  
- 기국과 인정기관 간에 그리고 인정기관들 간에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어야 함.  
⇒ 사안별로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우리 정부와 KR간에 의사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으나, 추후 필요하다면 기국과 인정기관 간에 정례회의(예: 마셜 아일랜드의 경우, 매년 2회 실시)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### RO Code 시행에 따라 기국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

- MEPC 65차(13.5) 및 MSC 92차(13.6)에서 RO Code 채택되어 '15.1.1 발효 예정
- 이에, RO Code 시행에 따라 기국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식별하고 대비 하고자 함.
- (제 1~2장 및 부록 1~2는 강제 규정이나, 제 3장 및 부록 3은 비 강제 규정임)
- 제 1장 : 일반 사항
- 제 2장 : 인정기관(RO)에 대한 위임 요건
- 제 3장 : 인정기관에 대한 기국의 감독 지침 제공
  - 부록 1 : 인정기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자격 요건
  - 부록 2 : 기국을 대신하여 협약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정기관의 기능 요건
  - 부록 3 : 협정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

\* First Author : jhyoo@krs.co.kr

† Corresponding Author : silee@kmou.ac.kr, 051-410-5099